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동물의 법적 지위 규정 〉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025호)

2025.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동물의 법적 지위 규정(안 제98조의2 신설)	2
2. 관계기관 의견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태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28.
3. 회 부 일 : 2024. 1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권리의 주체와 객체의 관점에서 인(人)과 물건으로 이분화하면서, 인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권리의 주체가 되고,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정의하여 인이 아닌 것은 물건으로 권리의 객체로 구분함.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에 따라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어 왔음.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증가 및 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커져감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동물학대나 유기 방지,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등 이른바 동물권 보호 강화의 요청이 확대되고 있어 현행법의 동물의 법적 지위가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함으로써, 시대적 인식의 변화와 동물권 강화의 토대를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취지임(안 제9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동물의 법적 지위 규정(안 제98조의2 신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¹⁾ 동물은 유체물로서 물건에 포함됨. 개정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가. 동물의 법적 지위²⁾

동물의 법적 지위는 ① 사람이 소유하는 특수한 물건으로서의 지위, ② 생명체라는 관념에서 동물복지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③ 애호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³⁾.

1)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이하 윤철홍, 「민사법 체계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2018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8. pp.80~87.; 홍진화·김판기, 「동물 관련 법제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적 고찰」, 『법학연구』 제52호, 2017.5., pp.141~145. 정리

3) 한편, 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물 소유자의 이름이 아닌 동물 자신의 이름으로 손해배상을

① 특수한 물건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권리를 가지는 주체와 권리의 대상인 객체를 나누어 규율하고 있는데,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므로 동물을 포함한 물건은 권리의 객체에 해당함.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현대적 동물권 운동과 동물권 논쟁의 영향으로 동물을 권리의 객체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로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을 두기 시작했음.

② 복지의 대상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동물은 일반적인 물건과는 다르게 생명이 있으므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고 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도 1991년에 그와 같은 정신을 담은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③ 애호의 대상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반려동물은 보호해야 하는 복지의 대상인 동시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대상이 되고 있어, 자동차와 같은 다른 물건이나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과는 달리 취급되고 있음. 이와 같은 견지에서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를 두고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금지,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허가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청구할 수 있는지(동물의 권리주체성)에 대한 논의도 있음(홍진희·김판기, 「동물 관련 법제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적 고찰」, 『법학연구』 제52호, 2017.5.).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관련 법률 중에서 일반법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동 법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 동물로서 ①포유류, ②조류, ③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이 법과 하위법령에서는 “반려동물”을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정의하면서, 이 중에서도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질병관리,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정의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음.

그 밖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개별 법에서도 법률의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동물의 정의, 규율 대상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동물에 관한 정의 규정

- 「동물보호법」⁴⁾ :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①포유류, ②조류, ③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⁵⁾: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험동물⁶⁾ :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⁷⁾ :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 참고로, 현재 동물과 관련된 법률로는 동물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동물보호법」 외에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검역법」, 「낙농진흥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각기 다른 부처 소관의 20여개의 법률들로 산재되어 있는바, 동물과 관련된 사건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법률을 체계화하기 위해 동물의 개념 및 분류, 법적 지위, 동물의 관리와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내용, 동물 관련 부서의 조정 및 컨트롤타워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동물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⁸⁾

4) 「동물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5)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7)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

나. 해외 입법례

오스트리아는 1988년 3월 10일 민법 제285a조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물건에 관한 규정들은 유사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동물에 대해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세계 최초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조항을 민법전에 신설하였음.

독일은 오스트리아 민법의 개정 태도를 수용하여 1990년 민법을 개정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동물에 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밖에 동물 소유자의 동물보호 규정 준수 의무, 압류금지 등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음.

스위스는 2002년 민법 개정을 통해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해서는 물건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프랑스는 민법에서 “동물은 감각이 있는 생명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이 논의될 당시 법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고 사람과 재산 사이에 중간 범주를 만드는 것을 피하면서도 감각이 있는 존재로서 동물의 특성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이 지적된 바 있음.

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홍진희·김관기, 「동물 관련 법제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적 고찰」, 『법학연구』 제52호, 2017.5., pp.146~149.

참고 2

해외 입법례

		원문	번역
오스트리아 민법		§ 285a. Tiere sind keine achen; sie werden durch besondere Gesetze geschützt. Die für Sachen geltenden Vorschriften sind auf Tiere nur insoweit anzuwenden, als keine abweichenden Regelungen bestehen.	제285조의a.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물건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동물에게 적용된다.
독일 민법		§ 90a Tiere Tiere sind keine Sachen. Sie werden durch besondere Gesetze geschützt. Auf sie sind die für Sachen geltenden Vorschriften entsprechend anzuwenden, soweit nicht etwas anderes bestimmt ist.	§ 90a 동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에 대하여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903 Befugnisse des Eigentümers Der Eigentümer einer Sache kann, soweit nicht das Gesetz oder Rechte Dritter entgegenstehen, mit der Sache nach Belieben verfahren und andere von jeder Einwirkung ausschließen. Der Eigentümer eines Tieres hat bei der Ausübung seiner Befugnisse die besonderen Vorschriften zum Schutz der Tiere zu beachten.	제903조 소유자의 권능 물건의 소유자는, 법률 또는 제3자의 권리에 반하지 아니 하는한, 물건을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고 또 타인의 어떠한 간섭도 배제할 수 있다. 동물의 소유자는 그 권능의 행사에 있어서 동물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스위스	민법	Art. 641a 1 Tiere sind keine Sachen. 2 Soweit für Tiere keine besonderen Regelungen bestehen, gelten für sie die auf Sachen anwendbaren Vorschriften.	제641조의a 1.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2. 동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형법	Dritter Teil: Begriffe Art. 110 3bis Stellt eine Bestimmung auf den Begriff der Sache ab, so findet sie entsprechende Anwendung auf Tiere.	3장 용어 제110조 3bis항 어떠한 규정이 물건에 적용되는 경우, 이는 동물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프랑스 민법		Livre II : Des biens et d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de la propriété Article 515-14 Les animaux sont des êtres vivants doués de sensibilité. Sous réserve des lois qui les protègent, les animaux sont soumis au régime des biens.	제2권 재산과 소유권의 변동 제515-14조 동물은 감각이 있는 생명체이다. 동물은 이를 보호하는 법률의 유보 아래 재산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자료: 이재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 및 시사점”, 2021.12.15., 입법조사처

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개정안의 취지는 생명을 가진 동물에 대하여 물건과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책임과 보호 의식을 강화하려는 것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독일 등 해외 입법례에서도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모든 동물의 물건성을 부정하는 개정안은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실적으로 동물의 권리 객체성 및 물건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모든 동물에 대하여 비물건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여건이 마련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동물의 물건성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는 긍정론과 부정론 등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한 긍정론을 살펴보면 현행법 체계에서 동물을 해치거나 죽이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범죄인 재물손괴죄로 처벌되고, 동물의 상해나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원칙적으로 시장의 교환가치만이 기준이 되는 한계가 있는데, 동물의 비물건성 조항을 신설하게 되면 동물 관련 분쟁에 있어 해석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새로운 규정과 상충 되는 법제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임.

예를 들어 반려동물 살상 시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치료비용과 위자

료를 배상받을 수 있는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이혼 또는 상속 시 동물의 보호자를 지정할 때 재산의 분할 대상이 아닌 적절한 양육 및 보호의 관점에서 고려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임.

더욱이 2018년 법무부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물건을 규정할 때 물건과 동물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 역시 긍정론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반면, 부정론은 현실적으로 동물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소유와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산업 및 분쟁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실질적인 동물의 보호는 「동물보호법」 등 다른 구체적인 공법과 형법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은 동물의 비물건화 조항은 구속력 없는 형성가능성이나 목표방향만을 열어놓는 프로그램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임.

또한, 동물이 물건이 아닌 경우 교통사고 등으로 동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책임보험에서 보험금 지출이 증가하고⁹⁾ 보험료가 상승하는 원인이 되는 등 동물이 물건이 아닐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공감의 필요한 측면이 있고,

9) 양승현,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입법론과 보험업 관련 영향 검토”, KIRI 보험법 리뷰 포커스, 2021.8.23.

현행 「형법」상 재물 개념은 「민법」상 물건 개념에 일치되게 해석해왔는데 동물이 민법상 물건이 아니고 이에 따라 형법상 재물이 아니라고 볼 경우 동물에 대하여 재물손괴죄 외에도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장물·권리행사방해와 같은 죄도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¹⁰⁾이 존재함.

2.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개정안을 동물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적극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민법을 개정하여 생명 존중 사상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면서, 이는 현행 법체계와의 조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54

10) 이재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 및 시사점”, 2021.12.15., 입법조사처